

2021년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 12.(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정인, 임형주, 홍지만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17건(안건번호 제2021-1681호~2312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865호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 점, 시정권고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될 경우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하며 제2021-1866호는 권리자가 직접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이 중단되었으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01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77개의 URL 정보에 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72호~14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 총 77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01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68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이며 밴드에서 음악 파일 100곡을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해당 밴드의 밴드명은 '☆☆☆☆☆☆☆☆'로,

현재 멤버수는 2,663명임.

‘★★★’ 밴드와 같이 주로 공통의 관심사나 친목 도모를 위하여 개설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회원 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회원 사이에 특별한 친목관계가 없는 공개적 또는 개방적 성격의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와 달리 회원들의 친목 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폐쇄적 성격이 강하므로 프라이버시나 사적인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우리 심의위원회는 기존에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 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심의하였음. 그러나 전체심의위원회(2019. 4. 26. 개최, 제50회)에서 밴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확산이 심화되고 있고, 밴드가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심의위원회는 밴드에서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밴드의 특성을 종전과 같이 엄격하게 고려하지 아니하고 시정권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해당 밴드는 초청장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폐쇄적인 밴드가 아니라 누구나 밴드명을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게시물을 볼 수 있어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8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B 위원: 해당 밴드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밴드가 맞는지?
- 오진해 전문위원: 밴드글은 멤버만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해당 밴드에 가입신청 후 밴드 관리자가 승인하면 가입되어 밴드 이용이 가능함.
- C 위원: 음악 파일 100곡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공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B,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8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호 제2021-1682~1684호는 민원인의 신고를 기초로 보호원이 심의 요청한 건임. 커뮤니티 사이트 '○○○○○○'에 게시된 게시물에 직접 링크로 연결된 '●●●●' 블로그에서 미국 애니메이션 '◇◇◇◇◇◇◇◇◇◇', '◆◆◆◆◆◆', '□□□□'를 각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C 위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함. 민원인이 신고한 것은 '■■■■■■■■'의 게시물이고,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 요청한 것은 '■■■■■■■■'에 게시된 URL에 의해 연결되는 국내 원천사이트를 조사한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 실행 화면을 보여주면서)그러함. 직접 링크 게시물을 통해 연결되는 불법 복제물이 국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을 때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 서버에 저장된 원천게시물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1-1682호~168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B 위원: 연결된 원천 게시물이 국내 서버인 점을 고려할 때 원천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가결 의견임.
- A, C, E 위원: 이견 없음.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82~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1-1865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 방송물 '△△△△△'의 스크린샷 1장을 이용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상품정보, 사용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행정조치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방송사 등 저작재산권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지급한 후 복제, 전송하지 않고 임의로 방송물의 일부를 이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의 저작권침해는 1회성에 그치고 이로써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거나 대규모, 반복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님.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 자체의 감상이 아니라 상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방송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임.
 해당 안전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판매자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을 사적인 권리로 규정하면

서 그 위반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나아가 심의대상 게시물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제품판매를 위한 설명이 주(主)를 이루고 있어, 시정권고에 따라 게시물이 삭제 또는 전송중단될 경우 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C 위원: '▲▲▲'은 가운데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인지?
- 오진해 전문위원: 방송인 '▽▽▽'이름을 비식별 처리한 것임. 출연자의 집을 스크린샷으로 보여주며, 출연자가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86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 저작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E 위원: 시정권고보다는 권리자가 게시자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보임.
- A, C, D 위원: 동의함. 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8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C 위원: 복제·전송자가 스스로 불법복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한 경우에도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1-1687, 1688호의 2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심의 후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는 취지에서 경고의 시정권고를 의결하실 수 있을 것임. 특히 안전번호 제2021-1688호 게시자는 반복 침해자이기 때문에 경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현재는 삭제되었어도 침해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면 경고 조치를 하여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E 위원: 두 안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모두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오진해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1-1687호는 제2021-1688호만큼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블로그는 아닌 것으로 보임. 다만 특정인이 몇 번이나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부터 경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 및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님들의 판단을 바랍.
- A 위원: 안전번호 제2021-1686~1687호는 현재 원안대로 부결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 제2021-1688호는 경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 E 위원: 안전번호 제2021-1688호와 같은 반복침해자에 경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경고 횟수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C 위원: 저는 블로그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해서라도 불법복제물을 게시했다면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심의일 현재 불법복제물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행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한번이라도 불법 복제·전송을 한 이력이 있으면 경고의 시정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고 현재는 그 상태 자체는 해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전번호 제2021-1687, 8호 모두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임.
- C 위원: 심의위원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 통해 제공되는 불법복제물의 경우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안전번호 제2021-1687, 8호를 부결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 A 위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 E 위원: C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안전번호 제2021-1687, 8호를 하나로 묶어서 동일한 잣대로 보아야 함.

- B, C 위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86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687~1688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안전번호 제2020-168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69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제2021-1690호와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임. 중복된 시정권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결 의견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권헌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1-169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안전번호 제2021-1690호와 동일한 게시물임을 확인하였고, 부결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691호는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690호, 1692호~2312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

입.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원더우먼 1984'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호 영화 '원더우먼 1984'는 12월에 개봉하여 극장 상영중인 최신 영화로, 해당 영화를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영화 '내가 죽던 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호 영화 '내가 죽던 날'은 11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로 172포인트에 판매중이며 10,900원에 합법 구매 가능함.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호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은 OCN 드라마로 넷플릭스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한 회당 1,650원에 구매 가능함. 해당 드라마의 1~10화를 1,212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690호, 1692호~231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1-1690호, 1692호~

2312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685호, 1686호, 1691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687호~1688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681호~1684호, 1689호~1690호, 1692호~2312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5쪽부터 1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1호~148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권현영 분과위원장이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 13.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임형주

위원 홍지만